

## 제 19 장 특 명 성

### 제 19.1 조 정 의

이 장의 목적상,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결정이라 함은 그 범위에 일반적으로 해당하는 인과 사실 상황에 적용되며 그리고 행위규범을 수립하는 행정결정 또는 해석을 말하나,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가. 구체적 사안에서 타방 당사국의 특정한 인·상품 또는 서비스에 적용되는 행정적 또는 준사법적 절차에서 내려진 결정이나 판정, 또는
- 나. 특정 행위 또는 관행에 대하여 내린 판정

### 제 19.2 조 공 표

1.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이 적용되는 사안에 관한 자국의 법률·규정·절차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결정이 신속하게 공표되거나 또는 이해관계인과 타방 당사국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달리 공개되는 것을 보장 한다.

2. 가능한 한도 내에서,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 법률, 규정 및 절차에 따라,

- 가. 당사국이 채택하겠다고 제안한 법률, 규정, 절차 그리고 행정결정을 사전에 공표하고,
- 나. 이해관계인과 타방 당사국에게 그러한 조치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 제 19.3 조 통보와 정보의 제공

1. 가능한 최대 한도 내에서, 각 당사국은 당해 당사국이 이 협정의 운용에 중대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이 협정상 타방 당사국의 이익에 달리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조치를 타방 당사국에게 통보한다.
2. 타방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일방 당사국은 신속히 조치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질의에 대하여 타방 당사국이 이전에 동 조치를 통보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답변한다.
3. 이 조에 따라 제공된 정보 또는 통보는 동 조치가 이 협정과 합치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이 조에 따른 통보, 요청 또는 정보는 관련 접촉선을 통하여 타방 당사국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 제 19.4 조 행정절차

제 19.2조에 언급된 조치를 일관되고, 공평하며 합리적인 방식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타방 당사국의 특정한 인,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그러한 조치를 적용하는 자국의 행정절차에서 다음을 보장한다.

- 가. 가능한 한, 절차가 개시된 때, 절차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타방 당사국의 인에게 절차의 성격에 대한 기술, 절차가 개시되는 법적 근거에 대한 언급 및 논쟁 사안에 대한 일반적 기술을 포함한 합리적인 통지를 자국 절차에 따라 제공하고,
- 나. 시간·절차의 성격 및 공익상 허용되는 경우, 타방 당사국 인은 최종 행정 조치 이전에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는 사실과 주장을 제출하는 합리적인 기회가 제공되며,
- 다. 동 절차는 당사국의 국내법을 따른다.

#### 제 19.5 조 재심 및 상소

1.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이 적용되는 사안에 관한 최종 행정조치의 신속한 재심과, 정당한 경우, 정정할 목적으로, 사법적·준사법적 또는 행정적 법정 또는 절차를 수립 또는 유지한다. 그러한 법원은 공평하고, 행정집행을 위임받은 사무소 또는 당국과 독립적이며 사안의 결과에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하여야 한다.

2. 각 당사국은 그러한 법정이나 절차에서 소송 당사자들에게 다음 권리가 제공되도록 보장한다.

가. 각자의 입장을 변호 또는 방어 할 수 있는 합리적 기회, 그리고

나. 증거 및 기록에 의한 입장 그리고, 국내법에서 요구되는 경우, 행정 당국이 수집한 기록에 기초한 결정

3. 각 당사국은, 국내법에 규정된 상소 또는 추가적 재심에 따라, 문제가 되는 행정조치와 관련된 사무소 또는 당국이 그러한 결정을 이행하는 것을 보장하고, 동 부서 또는 당국의 관행을 규율한다.